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영자산운용(주)

2. 제재조치일 : 2025. 12.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사외이사 선임의 투명성 제고 및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신영자산운용㈜(이하 '회사')는 내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등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사외이사후보 추천 사유, 위원회 위원들의 검증 또는 의견 개진 내용 등 사외이사 선임 절차 전반의 과정에 대해 기록·관리가 미흡하다.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사외이사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내역이 없다.

또한 회사는 내규「이사회규정」등에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제공 등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이사회 등 개최 이전에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제공이 미흡하게 이루어져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등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의 저해가 우려된다.

< 조치할 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추천 사유, 후보의 자격요건 및 적정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등 동 위원회의 실효성 및 사외이사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포함) 회의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배당계획 수립·이행 및 배당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강화

금융투자업자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내부유보에 관한 정책 등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배당정책은 자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익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배당 여부, 내부유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회사는 2015년 이후 운용자산총액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배당금액을 일정 수준(최소 118억원 이상)으로 유지함에 따라 FY2024 배당성향은 205.1%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배당계획, 배당정책 등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며, 대주주 등과의 협의 내용, 배당금 의사결정 과정, 배당금 지급 계획 및 배당금의 적정성 검토 등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기록・관리가 미흡하다.

< 조치할 사항 >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와 관련한 내부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배당금 지급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배당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하는 배당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한편, 의사결정 및 집행 절차의 기록・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고문제도 운영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및 투명성 강화

회사는 내규「경영자문위원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퇴임한 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검사종료일(2025. 7. 2.) 현재 3명의 고문을 위촉 중이다.

그러나 동 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촉기간, 보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 등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고문에 대해 '고문 활동내역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부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고문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문의 위촉 기간, 위촉 기간 연장 기준, 보수지급 기준 및 고문 활동 평가 등 세부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고문 활동의 실적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 강화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규「준법감시인 등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조치할 사항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통제 강화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규「내부통제규정」및「내부통제규정시행지침」등에 따라 임직원이 상장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 등을 정하여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내규에서 정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고 반복 위반자 등에 대하여 내규에서 정한 '강화된 매매제한 조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다.

< 조치할 사항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제한 기준, 점검 방식(점검 시스템 포함) 등을 개선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